

「(재)구미시장학재단 서울 구미학숙 운영 지원 출연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5년 9월 2일

나. 제 출 자: 구미시장

다. 회부일자: 2025년 9월 2일

라. 상정일자: 2025년 9월 11일

제29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 질의, 토론,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설명자: 미래교육돌봄국장 박 노 돈

나. 제안이유

- 서울 구미학숙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수도권 소재 대학에 진학한 지역출신 인재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업에 정진할 수 있는 면학 환경 제공
- 이에 출연기관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2026회계연도 구미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서울 구미학숙 운영 지원’ 출연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의결을 받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출연 개요

- 출연기관 : (재)구미시장학재단 * 서울 구미학숙 운영기관
- 출연금액 : 150백만원(운영예산)
- 출연근거
 - 「지방재정법」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구미시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 사업 개요

- 사업명 : 서울 구미학숙* 운영 지원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32길 30(동선동2가)
- 사업기간 : 2026년 1월 ~ 12월
- 사업내용 : 서울 구미학숙 운영을 위한 운영비 및 공공요금 지원
- 운영예산 : 430백만원(출연금 150, 입사생수입 170, 전기이월금 110)

○ 출연의 필요성

- 학숙 입사생들에게 쾌적한 주거·면학 환경을 제공하여 지역 우수인재 육성 및 학부모 경제적 부담 경감에 기여
- 인건비, 공공요금 등 학숙 운영 소요예산 충당 및 안정적·효율적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 필요

라.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0조
- 「구미시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7조

○ 예산조치 : 2026년도 예산편성

○ 합 의 : 예산재정과

○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3. 검토보고의 요지 - 전문위원 박 영 훈

○ 본 출연안은

- 「지방재정법」에 의거하여 (재)구미시장학재단 서울구미학숙 운영 지원을 위한 2026년도 출연금 예산 편성 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으로,

○ 검토 결과,

- 수도권 대학에 진학한 구미 지역 출신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과 면학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구미학숙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서울 구미학숙에 대한 출연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구미시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7조에 장학기금 출연 근거가 명시되어 있음.

- 향후 학령인구감소에 따른 학생 수요 감소, 인건비 상승과 시설 노후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재정 부담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운영 안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야 할 것임.
- 또한, 학숙 시설을 단순 거주 공간을 넘어 지역인재 네트워킹과 취업 지원의 장으로 활용하는 등 수요자의 의견을 수렴해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설 운영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 략

5. 토 론 요 지

- 구미학숙의 총 운영예산은 인건비와 운영비 외에도 기부금, 입사료, 이자 및 투자수입 등 다양한 재원이 있음에도 이 전년도 재무결산 자료에 따르면 약 3.5억~3.7억 수준의 지출로 매년 이월금이 발생하고 있으며, 실제 지출 규모에 비해 출연금이 과다하다고 보여짐.
- 출연금 외의 비용 내역이 불명확해 세부 내역을 철저히 파악한 후, 진정으로 필요한 예산 규모를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일부 타지자체는 학숙을 직영하거나 민간 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반면, 구미시는 장학재단을 통한 지원 방식이 고착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입사생 편의와 구미학숙에 대한 신뢰 확보를 위해 구미시 장학재단의 위탁·지원 방식을 포함한 전면적인 운영 방안 검토가 필요함

6. 소수의견의 요지: 생 략

7. 심 사 결 과: 원안가결